

등록번호	여성가족과-3785
등록일자	2026. 3. 5.
결재일자	2026. 3. 5.
공개구분	비공개 (5,7)

주무관	청소년담당	여성가족과장	안전교육국장
김은하	김문정	김미라	이은미
협조자	사회보장과 김민석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



여성가족과
[청소년팀]

요 지

국장 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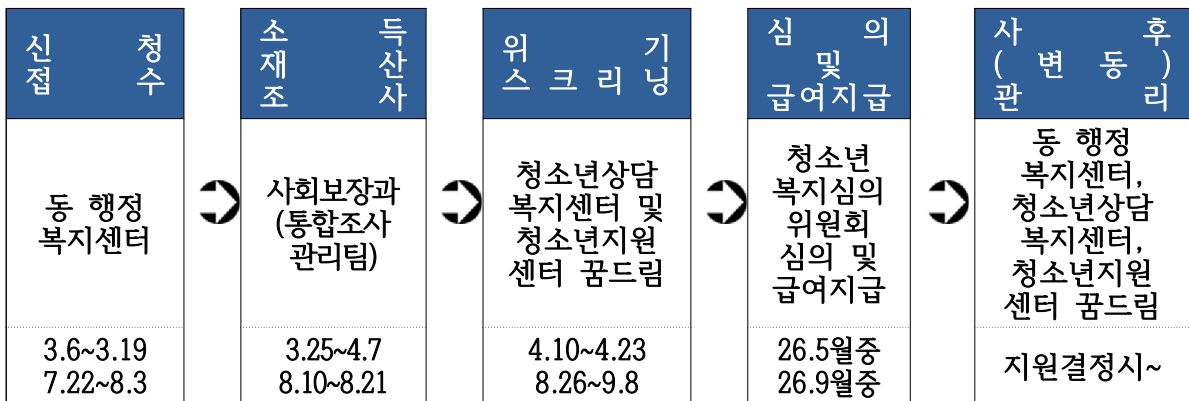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 추진방향

-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특별지원 제공
- 특별지원금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제도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 구 통합조사관리팀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한 소득·재산조사 협조로 특별지원사업 운영 강화
-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기 상황 스크리닝·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한 특별지원 대상자 선발 및 지원 실시

□ 2026년 추진계획

- 사업비 : 56,776천원(국70:시15:구15)
- 지원대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9세이상 24세이하 청소년
- 지원내용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지원 등
- 지원기간 : 1년 이내 (2026.12월 이내)
- 추진절차



□ 행정사항

-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접수 및 중복지원여부 검토 등
- 사회보장과(통합조사관리팀) : 지원대상자 소득·재산조사 협조
- 남동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꿈드림센터 : 상담 및 사례관리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사 전 점 검 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0”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검 토 항 목	예	아니 오	해당 없음
	의견수렴 주민참여	○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에 대한 방법이 고려되었는가? 예) 주민참여단, 주민 모니터링, 설문조사, 간담회 등	0		
여성 친화 도시	사회약자 배려 사항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였는가? 예)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	0		
	성인지성	○ 성역할 고정관념이 들어있지는 않는가? ○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않는가?	0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는가? 예) 장소·시설물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0		
	공 간 접근성	○ 시설 구축 또는 행사 추진 시 주민 모두에게 접근이 편리한 지 검토되었는가?	0		
	여성친화도시 조성자문단 컨설팅	○ 계획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자문단의 컨설팅이 이루어졌는가?			0
	단어의 올바른 사용	○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준수 여부	0		
		○ 지나친 한자어·외국어 혹은 일본식 한자어 자제	0		
공공 언어 바로 쓰기	문장의 올바른 사용	○ 문법에 맞는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구성 여부	0		
	고압적· 차별적 표현 자제	○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 여부	0		
		○ 차별적 표현(성별, 지역, 인종, 장애 등) 자제	0		
	점검시스템 활용	○ 온-나라, 한글 등의 교정·검토 기능 활용 - 잘못된 표현에 대한 사전 검토 실시	0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학업·상담 등의 서비스 또는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및 제15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장(위기청소년 지원)
- 2026년 청소년사업 안내(성평등가족부) 제2편 VIII.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II 추진방향

-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특별지원 제공
- 특별지원금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통장) 제도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 구 통합조사관리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협조로 특별지원사업 운영 강화
-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기 상황 스크리닝·청소년복지심의 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한 특별지원 대상자 선발 및 지원 실시
- 관내 학교, 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 유관기관 등 특별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대상 청소년의 발굴 경로 및 연계 확대

Ⅲ

2025년 추진실적

- 예 산 : 56,776천원
- 지원실적 : 56,463천원 / 51명 211건
- 지원현황

구 분	총 계	생활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지원인원(명)	51	37	0	0	10	4
지원건수(건)	211	151	0	0	45	15
지원금액(천원)	56,463	45,300	0	0	8,940	2,223

Ⅳ

사업개요

- 사 업 비 : 56,776천원(국 39,744천원, 시 8,516천원, 구 8,516천원)
- 지원대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4.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동일한 분야의 중복 지원 불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붙임1]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8호)

- (가구원 및 소득 범위)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해서만 가구원 및 소득산정에 포함

※ 동거 조부모, 19세 이상 형제·자매는 가구원 및 소득범위 산정에서 제외함

○ 지원내용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분야에 대한 비용 지원
- 신청 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1개 분야 지원 원칙

(단,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개 종류 이상 지원 가능)

구분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지원 금액	월 최대 65만원	연 최대 200만원	월 최대 30만원	월 최대 36만원	월 최대 30만원 *심리검사비 연40 만원 별도	연 최대 350만원	월 최대 30만원	예산 내 추후 결정
지원 내용	기초 생계비	건강검진, 치료	검정고시 교육비용, 학원비	지식·기술 습득비, 직업체험비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소송· 법률상담비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휴터 교정 등, 교복 등, 수학여행비, 학용품비 등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남동구 지원기준**을 최대 지원범위 내에서 결정

[참고] 2025년 남동구 특별지원사업 지원기준

구분	생활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비고
		수업료· 학교운영비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금액	월 30만원	월 15만원	월 30만원	월 25만원	월 20만원	월 15~30만원	

※ 위기도별 지원기준

1차: 보통 2개월, 긴급 3개월, 상당히 긴급 5개월, 매우긴급 6개월

2차: 보통 1개월, 긴급 2개월, 상당히 긴급 3개월, 매우긴급 4개월

○ 지원기간 : 2026. 12월 이내

V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 추진시기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시 기		절 차	내 용
상반기 하반기	'26.3.6.~ '26.3.19. '26.7.22.~ '26.8.3.	발 굴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 청소년지도자(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직권 신청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해당 청소년 동의 필요
상반기 하반기	'26.3.6.~ '26.3.19. '26.7.22.~ '26.8.3.	신 청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접수 - 대상여부 사전 검토(생활실태 등)
상반기 하반기	'26.3.25.~ '26.4.7. '26.8.10.~ '26.8.21.	소득·재산 조사	○ 사회보장과(통합조사관리팀) - 소득·재산·공제 등 30개 항목 조사(금융부채는 제외)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정보연계 조사 -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사업담당부서로 보장결정 요청
상반기 하반기	'26.4.10.~ '26.4.23. '26.8.26.~ '26.9.8.	위 기 스크리닝	○ 남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남동구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 위기 스크리닝(초기상담)을 통한 위기도 등 결정
상반기 하반기	'26.5월 중 '26.9월 중	심의 및 보장·결정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서면심의 가능) - 남동구 지원기준 결정 및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 가능. 필요 시 실무위원회 개최 및 사후 심의
상반기 하반기	'26.5월~ 지원 종료 시 '26.9월.~ 지원 종료 시	급 여· 서비스 통 보	○ 여성가족과(청소년팀) - 특별지원 대상 최종 통보·지원 (대상자, 동 행정복지센터, 남동구청소년상담복지 센터, 남동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등에 통보)
지원 결정 시 ~		사후 (변동) 관리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여성가족과(청소년팀) - 소득, 지원 관련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급여 중지 사유 발생 시 급여 중지 및 환수 조치 관리(여성가족과 청소년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사업대상자 상담 및 사례관리실시 등

1 사업대상자 발굴 및 신청·접수

○ 접수기간

- (상반기) 2026. 3. 6. ~ 2026. 3. 19.
- (하반기) 2026. 7. 22. ~ 2026. 8. 3.

○ 접수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붙임2]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붙임3]

(신청인 또는 발굴자가 작성하여 제출)

○ 확인사항 : 대상자 중복지원여부 확인

※ 타 법령 및 제도에 의한 동일분야 중복지원 금지

- 생활지원 중복금지 : 기초생활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거주(생활보조금 수급자), 쉼터 거주 등
- 건강지원 중복금지 : 기초생활사업(의료급여 1종), 긴급복지(의료지원)
- 학업지원 중복금지 : 기초생활사업(교육급여), 긴급복지(교육지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원지원, 초중고교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을 중복 금지
- 자립지원 중복금지 :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2 소득·재산 조사

○ 조사기간

- (상반기) 2026. 3. 25. ~ 2026. 4. 7.
- (하반기) 2026. 8. 10. ~ 2026. 8. 21.

○ 처리부서 : 사회보장과(통합조사관리팀)

※ 소득·재산·공제 등 소득인정액에 대한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 소득범위 :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의 소득만 조사

- (실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 주민등록 거주지 · 친부모 · 양부모를 구분하지 않음
- (동거 조부모 및 형제자매) 조부모나 19세 이상 형제 · 자매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지원 대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경우 청소년 1인 가구로 산정함
- 가구원 범위 : 실제 생계 같이하는 부모, 18세 이하 형제 · 자매 포함
(* 동거 조부모, 19세 이상 형제 · 자매 제외)
- 소득기준 산정방법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소득인정액 확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0.7(근로소득공제 30%*) + 기타소득
 - * △장애인, △34세 이하자, △65세 이상 어르신인 근로 및 사업소득은 50% 공제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소득·재산·공제 총 38개(수기2개) 항목 조사, 금융재산·부채 미포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붙임1]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8호)

< 26년 소득 인정액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단위: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 '26년부터 건보료 소득판정 기준표 미제공(복지부 급여기준과)

③ 위기 스크리닝

○ 기 간

- (상반기) 2026. 4. 10. ~ 2026. 4. 23.
- (하반기) 2026. 8. 26. ~ 2026. 9. 8.

○ 처리기관 :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남동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내 용 : 초기상담을 통한 위기도 결정 및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확인

④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운 영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

○ 개최시기 : (상반기) 2026. 5월 중 / (하반기) 2026. 9월 중

○ 구성인원 : 11명 (위원장 : 안전교육국장)

○ 심의내용

- 남동구 특별지원사업 지원분야 및 위기도별 지원기준 결정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원내용 변경, 기간 연장, 중지 등 결정 등

⑤ 급여·서비스 통보 및 지원

○ 시 기

- 상반기 : 2026. 5월 ~ 지원종료 시
- 하반기 : 2026. 9월 ~ 지원종료 시

○ 통보방법 : 결정요지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사회보장급여통지서 발송)

- 특별지원 신청서 사본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송부(사례관리대장 관리)

○ 급여·서비스 지급 : 정기지급일을 설정하여 지급(매월 20일 전후)

○ 세부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주기
생활지원	가.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하	매월 1회
건강지원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간호 바.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제외 * 본인부담액 지원	연 200만원 이하	1년 또는 매월
학업지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의 지원 라. 교과목 관련 학원비	월 15만원 이하 (학교 수업료 등)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학원비)	월 1회, 분기별, 1년 등
자립지원	가.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월 36만원 이하	월 1회, 분기별, 1년 등
상담지원	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 대상이 아님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월 1회, 분기별, 1년 등
법률지원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1회
활동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마. 체육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하	월 1회, 분기별, 1년 등
기타 지원	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 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지원 다. 수학여행비 지원 라.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위 제시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월 1회, 분기별, 1년 등

※ 상기 지원내용은 최대 지원기준액이며, 남동구 지원기준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지원범위 내에서 결정

※ 생활 지원 등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자가 해당 사용에 대한 계획 등 특별지원금 사용약정서[붙임6]를 작성하여 제출

6 사후(변동) 관리

○ 특별지원 현황 및 차세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정보관리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관리카드 작성 관리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및 통합관리카드에 기재·관리

○ 사례관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특별지원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사례관리계약서를 작성
-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지원기간 중 2~3회 실시)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생활지원 이외에 건강·학업·상담·자립지원 대상자는 공급기관에 수시로 서비스 이용여부 확인
- 지원기간 종료 시 상담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동반자사업, 청소년쉼터 등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상담지원 유지

○ 대상자 자격 등 변동관리(월 1회)

- 부양의무자의 근로능력이나 청소년의 위기상황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급여의 종류, 방법 등 변경 가능
*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원 중지 결정이 가능한 경우 : 연령기준 초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변동, 취업으로 인한 지원 불필요,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 확인, 청소년의 연락두절, 주거지 이동 등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당연 중지 사유
- 부당한 방법 또는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지원결정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IV

행정사항

○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붙임2, 붙임3 서식) 접수 후 **적합자(중복지원 등 검토)** 서류 제출

- 대상자 지원자격 변동사항 확인 : 해당 동에서 매월 10일 한 제출
- 자생단체 회의 및 주민 홍보로 대상자 적극 발굴
- 경찰서, 관내 학교, 교육청, 청소년 유관기관 등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발굴 및 홍보
- 사회보장과(통합조사관리팀) : **지원대상자 소득·재산조사 협조**
- 남동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위기상황 확인 및 **상담·사례관리**

- 붙임 1.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8호(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3.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4. 특별지원 사례관리.
5. 특별지원 사례관리 계약서.
6. 특별지원 사용약정서(생활지원).
7. 2026년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지침.
8.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제도 시행 안내. 끝.